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나2016776(본소), 2017나201678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등 매매대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2017나2016776(본소), 2017나2016783(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합508602(본소)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종종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 종결 2017. 7. 24

판결선 고 2017. 8. 23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합508602(본소), 2016
가합581027(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서울 강동구 B 임야 8,186㎡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2. 9. 13. 접수 제506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임야를 인도하라.

나.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1,440,7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B 임야 8,186㎡에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 2012. 9. 13. 접수 제506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임야를 인도하라.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440,7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당심에서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 및 증거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의 나항(판결문 제10쪽)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의 주장원고는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외환은행 예금계좌(예금주 원고, 계좌번호 X)는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E이 대표자 행세를 하면서 원고 종중 명의로개설하여 자신을 종중의 대표자로 등록하고 임의로 예금을 관리(입·출금)한 E 개인계좌이므로, 피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은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여 원고가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매매대금 전액을 송금한 사실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금융실명제 아래에서 실명확인절차를거쳐 개설된 예금계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서예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송금된 금원은 계좌 명의인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할 것인데,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E이 대표자 행세를 하면서 원고 종중 명의로 개설하여 자신을 종중의 대표자로 등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원고 명의의 계좌가 E 개인계좌로 사용되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E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상태에서 원고 계좌로 수령한매매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는지 여부는 계좌 명의인인 원고와 E 사이의 내부 문제로서이를 들어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

나.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항(판결문 제11쪽)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선이행항변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말소등기 및

인도의무 이행보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한다면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을 하기 전에는 피고가 본소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을 제1호증의 1의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는 피고의 매매대금지급에 앞서 소유권이전 및 이 사건 임야 인도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나,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무효에 따른 원고의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가피고의위 말소등기 및 인도의무 이행보다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대가의 선납)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산의 매각·대부,용역의 제공, 그 밖에 세입의 원인이되는 계약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내도록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체결에 있어 대가선납이 이루어지도록 업무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 위 규정이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어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의무가 선이행의무가 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이 사건과 같이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따라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함이 타당하므로(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6222판결 등 참조),원고에게 선이행의무가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배광국판사 임 효미판사 김상현